

The Status of Green Technology and Green Product Certification

녹색기술과 녹색제품인증의 현황

박형우 / 박사 · 한국포장학회 고문

I. 서론

전 세계적 문제점으로 대두된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및 화석연료 고갈의 주요 해결책 중 하나로 바이오화학산업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특히 죽은 고래를 해부해보니 고래 배속에서 나온 플라스틱이 5.9kg이었다는 내용이 TV와 신문에 보도되면서 세계적으로 환경과 지구보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생분해성 플라스틱, 즉 바이오플라스틱과 같은 바이오소재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바이오 베이스 플라스틱은 기존의 화석연료 대신 재생이 가능한 식물유래 자원인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해 고분자를 합성 및 개발한 것으로 그 원료인 바이오매스가 광합성에 의해 생성되는 과정에서 공기 중 이산화탄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탄소배출 저감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유용한 소재라 할 수 있다. 그러한 이유로 100% 생분해되는 폴리 락타이드(Poly lactic acid)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바이오 플라스틱의 개발은 현재 기술 수준에서 석유화학제품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저탄소 녹색성장산업의 핵심산업으로 개발 필요성이 상당히 높다.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고, 제품도 상당수 나와 활용 중이다.

생분해성, 식물기반 제품에 대한 높은 소비 트렌드와 석유기반 제품보다는 바이오소재기반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적 환경이 산업 전반에 걸친 바이오플라스틱 개발 필요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생활용품분야의 경우, 바이오 에탄올을 이용한 페트병, 친환경 코팅 종이, 생분해성 문구류, 원예용 자재이 시판되고 있다.

더욱이 세계적 브랜드의 전자, 자동차, 화학 제조사들은 바이오매스 유래 원료를 이용한 의류, 생필품, 가전제품, 자동차, 친환경 내장재와 재생가능한 재활용플라스틱을 적용한 친환경 제품의 개발 및 판매 전략으로 에코 프렌들리(eco-friendly) 제품 개발과 기업 이미지 창출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지속적인 산업 성장성과 고부가가치 창출 기술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셀룰로오스는 소재 특성상 분자 내 분자 간 강력한 수소결합으로 인해 일반적인 용융공정 적용이 불가능하며, 일반적인 유기용매 등에 대한 용해성이 없어 셀룰로오스 유도체의 직접 용융화와 가소제 혼입을 통한 용융가공법 등이 선택되어 적용되고 있으나 셀룰로오스 유도체들은 범용 플라스틱에 비해 높은 유리전이온도와 좁은 용융가공온도 영역을 가지는 것이 특징이다. 가공을 위한 사출 성형 시 액정구조로 인해 배향의 용이성, 즉 안정적인 사출성형 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단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전 지구적으로 자연친화적 포장, 다시 말해 생분해되는 바이오플라스틱의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고, 인쇄에 사용되는 톨루엔 등의 각종 휘발성 용매들이 알코올이나 수용성 잉크로 바뀌고 있다.

정부에서는 녹색기술과 녹색제품 및 녹색기업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친환경산업으로 육성해야할 상황에 처해 있고 소비자들도 친환경 제품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어 우리 포장업계도 녹색기술과 녹색제품이 왜 필요한지, 무엇을 준비해 인증을 받는지 등을 알고 있어야만 한다. 이에 녹색기술 인증 평가기관 가운데 연포장재와 관련한 녹색기술과 녹색제품을 평가·관리하고 있는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하 농기평)의 평가를 수차례 해본 경험을 토대로 농기평의 허락을 받아 녹색기술과 녹색제품 인증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한다. 포장업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II. 녹색인증의 목적과 근거

1. 녹색인증 추진 목적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거해 신성장 동력인 유망 녹색기술의 활용을 촉진하여 에너지 및 자원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망한 녹색기술 또는 사업을 인증하고 지원하는 제도이다.

2. 추진 근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및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을 근거로 한다.

제32조(녹색기술·녹색산업의 표준화 및 인증 등)

- ① 정부는 국내에서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인 녹색기술·녹색산업이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국제표준에 부합되도록 표준화 기반을 구축하고 녹색기술·녹색산업의 국제표준화 활동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녹색기술·녹색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기술, 녹색사업,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하거나 녹색전문기업 확인, 공공기관의 구매의무화 또는 기술지도 등을 할 수 있다.
- ③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이나 확인을 받은 경우
 - 2. 중대한 결함이 있어 인증이나 확인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표준화, 인증 및 취소 등에 관하여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녹색기술의 정의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이다. 예컨대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 등이 있다.

Ⅲ. 녹색인증 신청방법 및 평가절차

1. 인증의 종류

녹색인증 신청자의 목적 및 인증대상에 따라 인증과 확인으로 구분한다. 녹색인증에는 녹색기술 인증, 녹색기술제품 확인, 녹색사업 인증, 녹색전문기업 확인 등이 있다.

2. 신청방법 및 평가수수료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접수(www.greencertif.or.kr, 수시접수)이고, 제출 서류 및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3. 인증 종류별 평가방법

[표 1] 녹색인증 신청방법 및 평가수수료

구분	서류명	수수료
녹색기술	1. 신청 기술 설명서 및 요약서 2. 신청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사업자 및 법인)(최근 3개월 이내) 3.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4. 관련 지식재산권 또는 실시권(특허등록원부 설정에 한함)에 관한 증빙 5. 별표4의 기술수준을 증빙하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 단,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자체시험성적서 제출	100만원
녹색기술제품	1. 녹색기술 신청서류와 동일 2. 제품 생산가능 증빙(공장등록증, 직접생산증명서, OEM제조 계약서 등) 3. 품질경영인증서(녹색인증제 수행지침 별지 제7-1호 서식 참조) 4. 제품의 성능 증빙(녹색인증제 수행지침 별지 제7-1호 서식 참조) - 단,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자체시험성적서 제출	30만원/건
녹색사업	1. 신청 사업 설명서(별지 제2-1호 서식) 2. 관련 지식재산권 또는 사업권에 관한 증빙 3.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50만원
녹색전문기업	1. 매출액 비중 내역서(별지 제3-1호 서식) 2.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사업자 및 법인)(최근 3개월 이내) 3.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4.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서 5.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수수료 없음

[표 2] 녹색기술 인증

대상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 하는 기술	
분야	대분류 10개 - 중분류 93개 - 소분류 428개 - 핵심요소기술 2,007개	
평가 절차	<pre> graph LR A[신청서 접수] --> B[신청서류 검토] B --> C[현장 평가] C --> D[서류 평가] D --> E[최종 심의] E --> F[인증서 발급] subgraph A_institution [한국산업 기술진흥원] A E end subgraph B_institution [평가 기관] B C D end subgraph F_institution [평가기관 담당부처] F end </pre>	
기준	기술성과 녹색성을 기준으로 평가. 평균점수 70점 이상 시 적합. * 단 신청한 기술이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별표 4] 의 기술수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부적합 처리	
평가 항목	기술성(60)	신청기술의 우수성, 기술의 완성도, 기술의 완성도, 기술의 혁신성, 사업추진의 타당성 및 기술적 파급효과
	녹색성(40)	에너지자원 활용의 효율성과 절약성, 녹색성장기여도(온실가스/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등

[표 3] 녹색기술제품 확인

대상	인증된 녹색기술을 적용한 제품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상용화한 제품											
평가 절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신청서 접수</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신청서류 검토</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현장 평가</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최종 심의</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인증서 발급</td> </tr> <tr>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한국산업 기술진흥원</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평가 기관</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평가 기관</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한국산업 기술진흥원</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평가기관 담당부처</td> </tr> </table>		신청서 접수	신청서류 검토	현장 평가	최종 심의	인증서 발급	한국산업 기술진흥원	평가 기관	평가 기관	한국산업 기술진흥원	평가기관 담당부처
신청서 접수	신청서류 검토	현장 평가	최종 심의	인증서 발급								
한국산업 기술진흥원	평가 기관	평가 기관	한국산업 기술진흥원	평가기관 담당부처								
기준	제품생산 가능여부, 품질경영 확보 및 성능을 평가 * 녹색기술과 동시신청 및 평가 진행 가능(단, 동시신청한 녹색기술의 부적합 판정 시, 자동으로 부적합 판정)											
평가 항목	인증유무	녹색기술 인증서 및 인증제품 보유 유무										
	생산 가능여부	공장 및 생산시설 보유 유무										
	품질경영	ISO 등 품질경영관련 인증 보유 유무										
	제품성능	외부기관 시험성적서										

[표 4] 녹색기술 인증

대상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경제적,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													
분야	친환경 안전 농수산식품 공급 사업 등 9개 분야 109개 사업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7개 분야, 32개 사업													
평가 절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신청서 접수</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신청서류 검토</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현장 평가</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서류 평가</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최종 심의</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인증서 발급</td> </tr> <tr>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한국산업 기술진흥원</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평가 기관</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평가 기관</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평가 기관</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한국산업 기술진흥원</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평가기관 담당부처</td> </tr> </table>		신청서 접수	신청서류 검토	현장 평가	서류 평가	최종 심의	인증서 발급	한국산업 기술진흥원	평가 기관	평가 기관	평가 기관	한국산업 기술진흥원	평가기관 담당부처
신청서 접수	신청서류 검토	현장 평가	서류 평가	최종 심의	인증서 발급									
한국산업 기술진흥원	평가 기관	평가 기관	평가 기관	한국산업 기술진흥원	평가기관 담당부처									
기준	환경기대효과, 녹색기술 활용성 및 정책적합성을 기준으로 평가, 평균점수 70점 이상 시 적합. * 단, 평가위원 과반수가 70점 미만으로 평가한 경우 부적합 처리													
평가 항목	환경기대효과(50점)	에너지 절감, CO ₂ 저감, 오염 물질 저감 등, 산림훼손, 습지·생태공간 훼손, 오염물질 배출 등												
	녹색기술 활용(30점)	녹색기술의 사업기여도, 사업목표와 녹색기술 활용의 부합성												
	정책적합성(20점)	사업목표의 구체성 및 명확성, 사업유형별 정책목표와의 부합성												

[표 5] 녹색전문기업 확인

대상	전년도 총 매출액에서 인증 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이 20% 이상인 기업											
평가 절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신청서 접수</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신청서류 검토</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현장 평가</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최종 심의</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인증서 발급</td> </tr> <tr>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한국산업 기술진흥원</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평가 기관</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평가 기관</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한국산업 기술진흥원</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평가기관 담당부처</td> </tr> </table>		신청서 접수	신청서류 검토	현장 평가	최종 심의	인증서 발급	한국산업 기술진흥원	평가 기관	평가 기관	한국산업 기술진흥원	평가기관 담당부처
신청서 접수	신청서류 검토	현장 평가	최종 심의	인증서 발급								
한국산업 기술진흥원	평가 기관	평가 기관	한국산업 기술진흥원	평가기관 담당부처								
기준	사업 경과시점 및 녹색기술 매출비중을 기준으로 검토·확인											
평가 항목	창업이후 경과시간	창업 후 1년이 경과										
	녹색기술 매출비중	녹색기술에 의한 신청 전년도 매출액 비중이 총매출액의 20% 이상인 기업										

Ⅳ. 인증기술과 제품에 대한 지원혜택

1. 지원 혜택(녹색인증사업화 지원제도)

[표 6] 지원 혜택(녹색인증사업화 지원제도)

구분	기관명	사업·제도명	혜택	관련법령·지침
녹색 기술	조달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2단계 경쟁 종합평가)	기본평가항목(60) 중 신인도 항목(-1.75~+2.5) +1점 부여(녹색기술)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별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사전자격심사)	기술능력평가항목(25점) 중 19점 부여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표 2]
		물품구매 적격심사	신인도 항목(+5~-5) 가점 최대 1.5점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별표 2]
	특허청	특허출원 심사 시 우선심사	특허출원우선심사 자격 부여(녹색기술 연관 특허)	특허법 시행령 제9조
		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 지원 - 등록 특허에 대한 가치평가 등 수행 소요비용 지원	2차 심의(PT발표) 시 가점 5점 부여(녹색기술 연관 특허)	발명진흥법 제30조, 제32조에 따른 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 지원사업 시행계획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증기금)	녹색성장산업영위기업 우대지원 - 기술보증기금 우선적 보증지원	우선적으로 보증지원하며 보증비용 우대(90%이상 단, 창업 후 7년 이내 한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1조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 기술·사업성 우수 중소기업에 장기 저리의 자금 공급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대상(기술혁신 분야) 해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67조에 따른 중소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산업통상자원부	녹색인증 성능검사비용 지원(중소기업에 한함)	총 소요비용의 50%(최대 100만원/건), 기업당 2회	녹색인증제 수행 지침 제12조의2에 따른 녹색인증기업 성능시험 검사비용 지원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전시회 지원제도 - 직접경비 50%, 운송비 편도 100% 지원 등	선정 시 기업경쟁력 부분(20점) 중 5점 부여	KOTRA 해외전시회 지원지침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전문연구요원 병역지정업체 선정	선정 시 가점(23점) 중 5점 부여	병역법 시행령 제73조, 제77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병역지정업체 선정신청 공고
녹색기술 제품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기술품질가점(5점) 중 1점 부여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별지 2의2], [별지 2의3]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우선구매 요청 자격 부여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3조
전문기업	방위사업청	물품제조 적격심사	신인도 항목(4.2~-5점) 가점 0.5점	(방위사업청) 물품 적격심사 기준
기술, 제품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녹색기술제품 전용물 등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운영규정
	기술, 사업	방송통신위원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제작비 50% 지원)	지원신청 자격 부여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사업(광고비 70% 할인)		지원신청 자격 부여	KOBACO 혁신형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선정 기준	
기술, 사업 전문 기업	국방부	물품제조 적격심사	신인도 항목(3~-5점) 가점 0.5점	(국방부) 물품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기획재정부, 조달청, 국방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정부발주공사에 한함)	신인도 항목(3~-7점, 국방부의 경우 3~-3점) 가점 2점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별표 2]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별표 3] 군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운영 기준에 관한 훈령 [별표 3]
	금융위원회(신용보증기금)	녹색성장산업 영위기업 보증 - 녹색기술·사업 보유기업, 녹색전문기업에 대한 보증우대지원	보증료 차감 -0.2%,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지원하는 경우 대출이율 우대 등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1조
기술, 제품, 사업 전문기업	환경부	환경정책자금 융자	우선지원 순위평가 기준 환경사업전문성 항목(6점) 중 1점 부여	환경정책자금 융자운용요강(환경산업기술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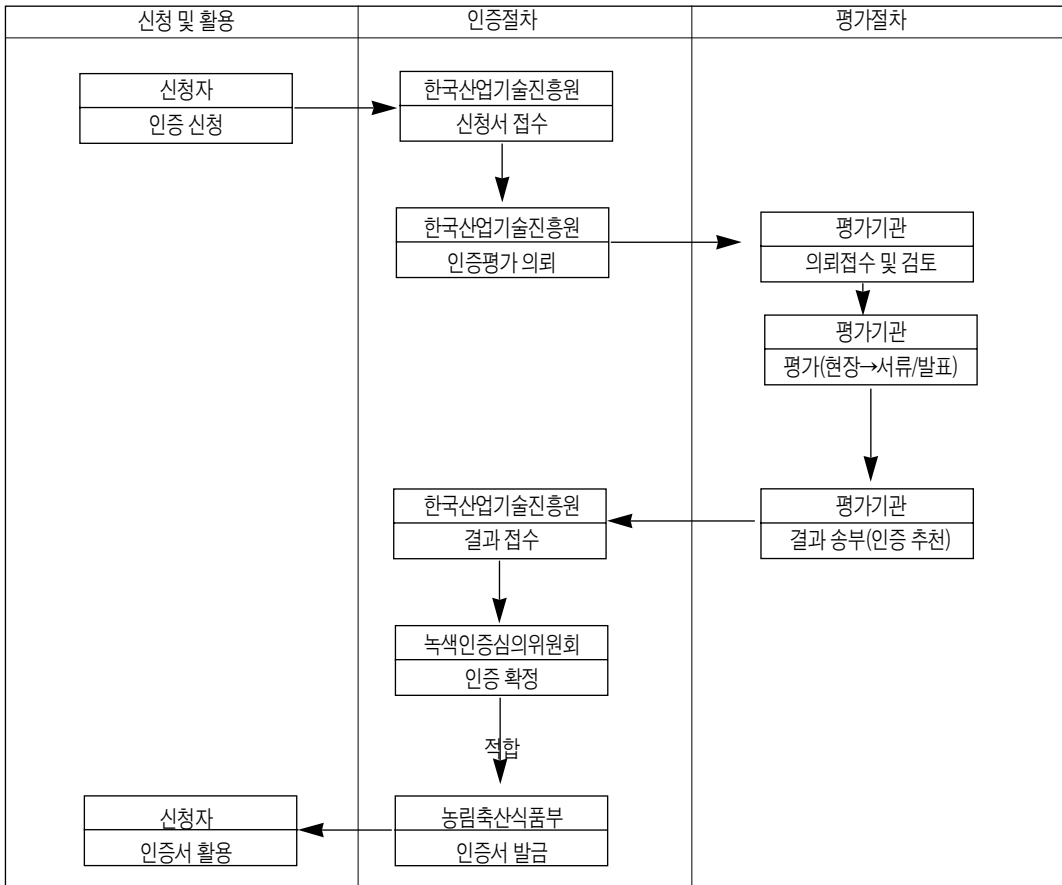
V. 연포장재 관련 녹색기술인증 현황

[표 7] 연포장재 관련 녹색기술인증 현황

기술명(국문)	기업명	인증번호	분류코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핵심기술	인증일자	만료일자	평가기관(부처)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생분해성 유연포장재 제조기술	(주)에이유	GT-11-00182	T090604	친환경 농식품	안전 유통	저장·포장재	환경친화형 생분해성 식품포장재 제조 기술	2011-09-01	2015-08-31	농림식품기술기획기원(농림축산식품부)
LDPE(저밀도 폴리에틸렌) 필름을 활용한 세탁기 수축포장 기술	삼성전자(주)	GT-15-00107	T100303	환경보호 및 보전	폐기물 및 폐자원	폐기물 저감	폐기물 감량화 기술	2015-05-21	2018-05-20	한국환경산업기술원(환경부)
소디움 가소화 셀룰로오스를 이용한 산화생분해 첨가제 및 이를 첨가한 포장재, 사출품 제조기술	(주)바이오소재	GT-15-00152	T100501	환경보호 및 보전	친환경 제품	친환경 원부자재	생분해, 광분해, 자연분해 원료 제조 기술	2015-07-23	2018-07-22	한국환경산업기술원(환경부)
생분해 원료 및 이를 이용한 생분해 포장재	(주)바이오소재	GT-16-00042	T100501	환경보호 및 보전	친환경 제품	친환경 원부자재	생분해, 광분해, 자연분해 원료 제조 기술	2016-03-31	2019-03-30	기술보증기금(중소벤처기업부)
환경 친화적인 인쇄 및 가공기술을 이용한 식품용 포장재 제조기술	(주)오리온	GT-17-00340	T100503	환경보호 및 보전	친환경 제품	친환경제품 설계 및 생산/처리 기술	환경독성물질 대체 및 유해성 저감 기술	2017-10-26	2020-10-25	한국환경산업기술원(환경부)
식물제 가소화를 이용한 산화생분해 첨가제 및 이를 첨가한 포장재, 사출품 제조기술	(주)바이오소재	GT-18-00482	T100501	환경보호 및 보전	친환경 제품	친환경 원부자재	생분해 원료 제조 기술	2018-07-12	2021-07-11	기술보증기금(중소벤처기업부)
알칼리 해리성 및 생분해성을 부여한 수용성 코팅 종이 제조기술	(주)바이오소재	GT-18-00515	T100302	환경보호 및 보전	폐기물 및 폐자원	폐기물/자원 재활용	폐자원 재활용 기술	2018-09-06	2021-09-05	농림식품기술기획기원(농림축산식품부)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탄소저감 식품포장재 및 용기 제조 기술	(주)에이유	GT-18-00539	T090604	친환경 농수산물	안전유통	저장·포장재	환경친화형 생분해성 식품포장재 제조 기술	2018-10-18	2021-10-17	농림식품기술기획기원(농림축산식품부)
유독물 대체 잉크를 이용한 포장재 제조기술	(주)에스피씨팩	GT-18-00552	T100503	환경보호 및 보전	친환경 제품	친환경제품 설계 및 생산/처리 기술	환경독성물질 대체 및 유해성 저감 기술	2018-11-15	2021-11-14	농림식품기술기획기원(농림축산식품부)
플렉소 인쇄기술을 이용한 빵류 포장재(CPP필름) 제조기술	(주)에스피씨팩	GT-19-00648	T100503	환경보호 및 보전	친환경 제품	친환경제품 설계 및 생산/처리 기술	환경독성물질 대체 및 유해성 저감 기술	2019-04-18	2022-04-17	농림식품기술기획기원(농림축산식품부)
에탄올 베이스 잉크 및 저심도 제판 인쇄 기술을 이용한 포장재 제조기술	울촌화학(주)	GT-20-00835	T100503	환경보호 및 보전	친환경 제품	친환경제품 설계 및 생산/처리 기술	환경독성물질 대체 및 유해성 저감 기술	2020-01-30	2023-01-29	농림식품기술기획기원(농림축산식품부)
에탄올 베이스 잉크와 그래비아 인쇄-합지 인라인공정을 적용한 식품포장재 제조 기술	롯데알미늄(주)	GT-20-00911	T100503	환경보호 및 보전	친환경 제품	친환경제품 설계 및 생산/처리 기술	환경독성물질 대체 및 유해성 저감 기술	2020-07-16	2023-07-15	농림식품기술기획기원(농림축산식품부)
유기산, 천연유를 이용한 향균 신선도 원료 및 이를 적용한 제품제조기술	(주)바이오소재	GT-20-00979	T100503	환경보호 및 보전	친환경 제품	친환경제품 설계 및 생산/처리 기술	고기능성 소재·제품	2020-11-19	2023-11-18	기술보증기금(중소벤처기업부)
환경독성물질 저감 잉크를 이용한 포장재 제조 기술	(주)유상	GT-20-01010	T100503	환경보호 및 보전	친환경 제품	친환경제품 설계 및 생산/처리 기술	환경독성물질 대체 및 유해성 저감 기술	2020-12-17	2023-12-16	농림식품기술기획기원(농림축산식품부)

VI. 녹색인증제 추진 절차

[표 7] 연포장재 관련 녹색기술인증 현황



행정적 처리(신청 접수 및 결과 통보)는 전담기관에서 담당하고 각 평가기관으로 접수된 기술 또는 사업 등의 평가를 의뢰한다.

※ 원고 내 자료 출처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